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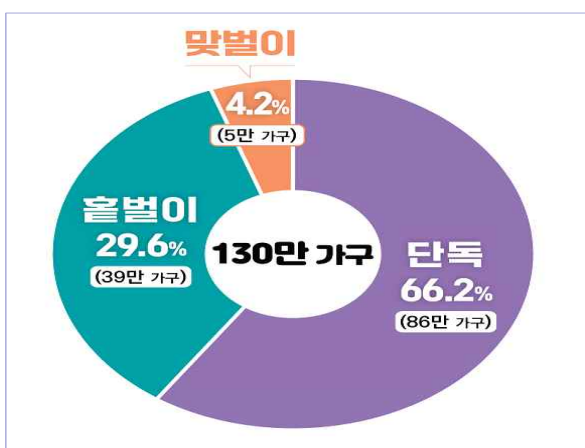
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'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,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

-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 대상 ...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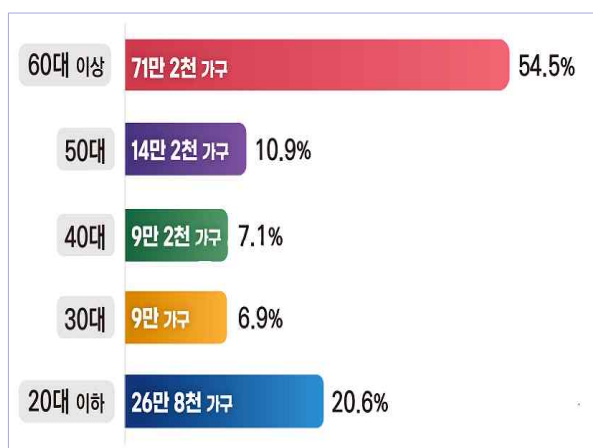
- (신청 안내)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.
-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,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.
-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,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(5.1.~5.31.)에 신청하여야 한다.

<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현황 >

가구 유형별 안내대상자



연령대별 안내대상자



- (신청 방법)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, 모바일 안내문의 '신청하기'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(QR)코드,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

-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**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**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- **(자동신청)**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'**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**'를 운영하고 있다.
- 이번 안내대상자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**72만 가구**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다.
-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**안내문을 발송할 예정**이며, 홈택스(PC·모바일)·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·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-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, '**28년 귀속 정기분(29.5월)**까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.
- **(직접신청)**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·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,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**홈택스(PC·모바일)**를 통해 '**직접신청***'할 수 있다.

*** 신청 경로** ▶ 홈(손)택스(로그인)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 → 근로장려금반기신청 → 직접입력신청

- **(상담편의 제고)**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「**장려금 상담센터**」로 전화하여 상담(평일 9시~18시) 받을 수 있으며,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「**콜백 서비스**」도 제공하고 있다.
- 아울러, 세무서 **대표전화**나 **국세상담센터(☎126)** 전화 연결 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**맞춤형 ARS 상담***(24시간 가능)도 이용 가능하다.

*** ARS상담서비스** ▶ [세무서] ☎대표번호 » ARS(디지털 1번, 음성 2번) » 장려금 » 본인인증
▶ [국세상담센터] ☎126 » 장려금 » 본인인증

- (확대 안내) '26년 세법개정(안)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.
-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, 홑벌이 가구 310만 원,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되고,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,600만 원 미만, 홑벌이 가구 3,7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 5,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'27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증가될 예정이다.
- (유의사항)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·소득·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.
-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,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.
- * 국세청 발송 메시지(안심마크 적용) : 국세청 로고() , 인증마크() , 안심문구(확인된 발신번호)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장려금 혜택이 꼭 필요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,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	책임자	과 장	정상수 (044-204-3801)
		담당자	사무관	임선미 (044-204-382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	권동철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	정명숙 (044-204-2592)

참고 1

신청 안내 현황 및 신청 요건

□ 신청 안내 현황

(천 가구)

가구유형	계	20대 이하	30대	40대	50대	60대	70대 이상
계	1,304	268	90	92	142	220	492
단독	864	258	68	41	77	125	295
홀벌이	386	10	20	48	59	80	169
맞벌이	54	-	2	3	6	15	28

□ 신청 요건 :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

≫ '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 아래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가구유형	가구원 요건	소득 요건(부부합산)	⑥재산 요건
	('25.12.31. 기준)	('25년 ④연간 총소득 및 '26년 ⑤연간 총급여액)	('25.6.1. 기준)
홀벌이가구	①배우자, ②18세 미만 부양자녀, ③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	4만~3,200만 원 미만	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맞벌이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	600만~4,400만 원 미만	재산 1억7천만 원 이상, 2억4천만 원 미만은 장려금 50%만 지급
단독가구	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	4만~2,200만 원 미만	

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서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자

② '07.1.2. 이후 출생·③ '55.12.31. 이전 출생 : ②,③연간소득금액*이 100만 원 이하인 자

*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·퇴직·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

④ 근로소득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 및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·퇴직·양도소득은 제외

⑤ '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

* [계속근무자] 상반기 총급여+(상반기 총급여÷근무월수)×6 [중도퇴직자·일용근로자] 상반기총급여×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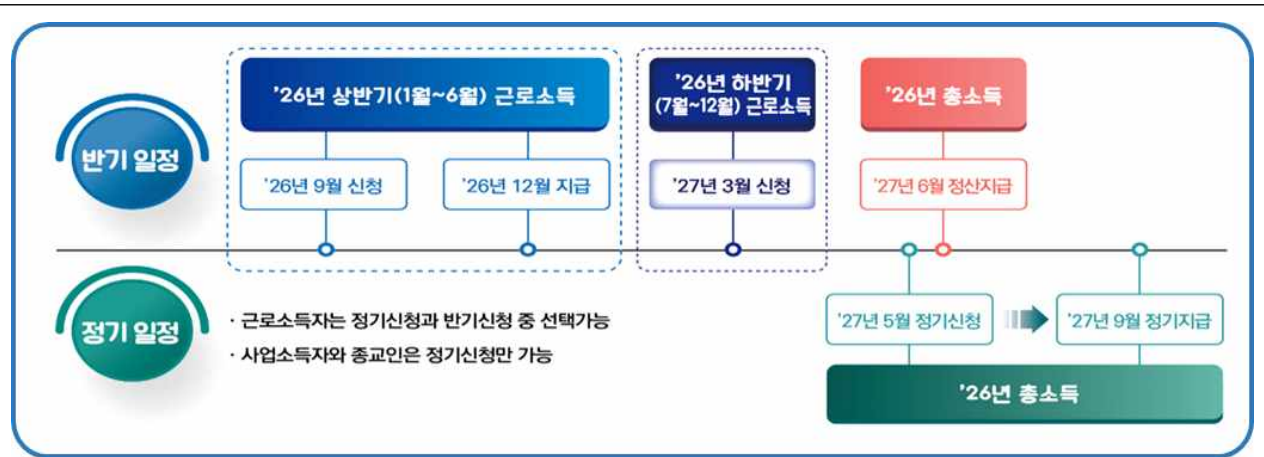
⑥ 부동산·승용차(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), 분양권, 전세금*, 예금, 주식, 회원권 등 합계액

*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(기준시가의 55%) 중 적은 금액 적용, 상가는 실제전세금 적용

[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: 임대차계약을 제출하면 실제전세금으로 재산요건 기준을 판단합니다.]

참고 2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·지급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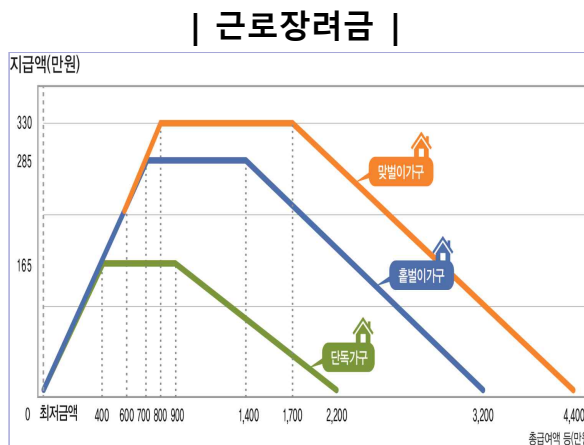


*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.30.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 지급

-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는 반기·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,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 9월에 정기 지급할 예정입니다.

참고 3

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모형 (연간)



-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**연간 예상산정액**(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)의 **35%**를 12월에 지급하고, 내년 6월에 정산(연간 산정액-12월 지급액)합니다.
 -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**자녀장려금**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,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에 충족될 경우 **내년 6월 하반기분 지급 시**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**총급여액**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, **재산 합계액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인 경우** 산정액의 **50%**만 지급됩니다.

참고 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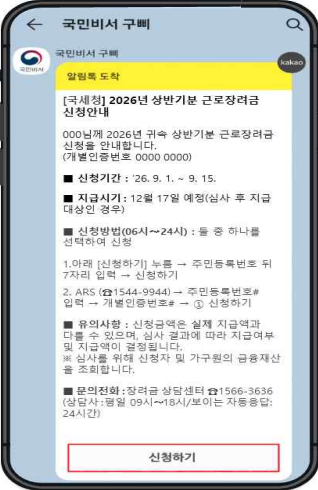
신청 방법

① 모바일 손택스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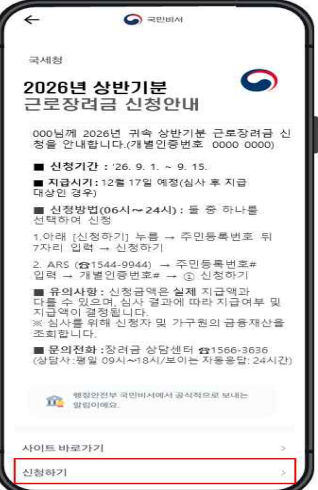
□ (국민비서) 가입자는 알림 등록 앱(카카오톡, 토스 등),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

① 메시지에서 '신청하기' 누름

<카카오톡>



<토스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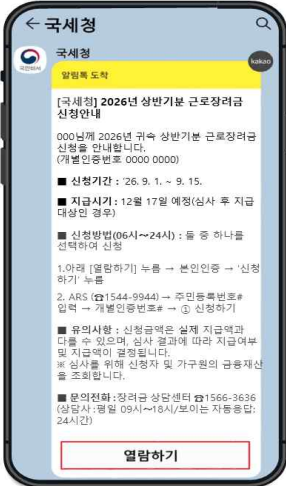


② 손택스에서 신청



□ (카카오톡/네이버) ①'열람하기' → ②본인인증 → ③'신청하기' →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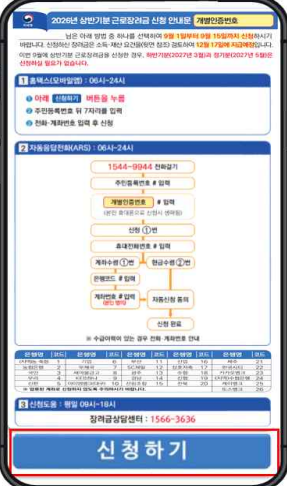
① '열람하기' 누르기



② 본인인증



③ '신청하기' 누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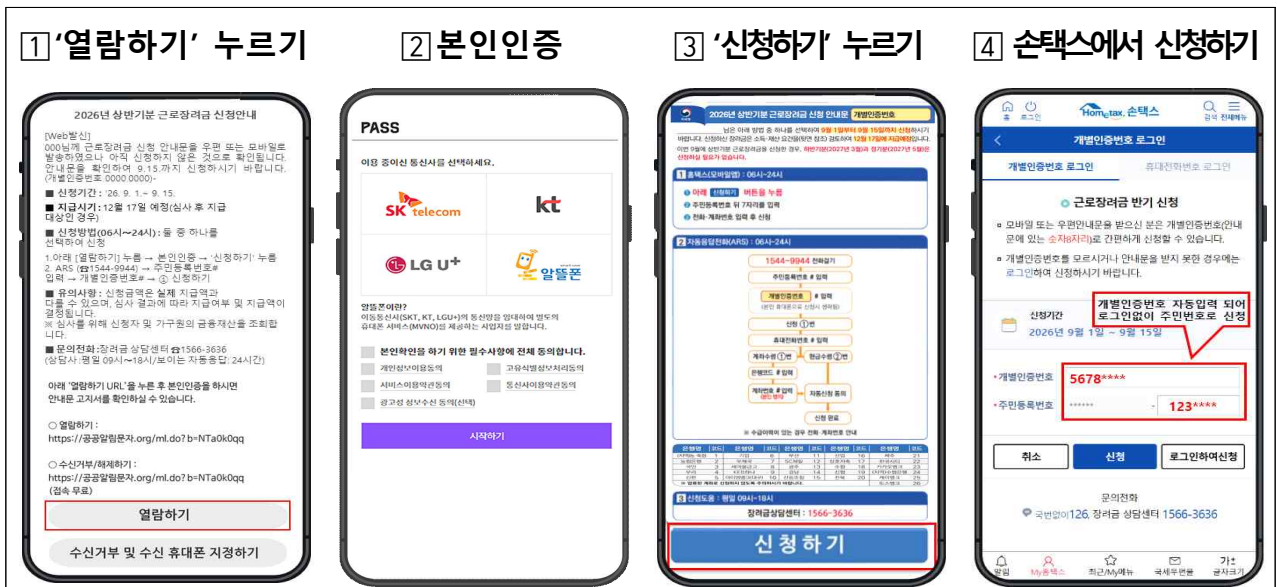


④ 손택스에서 신청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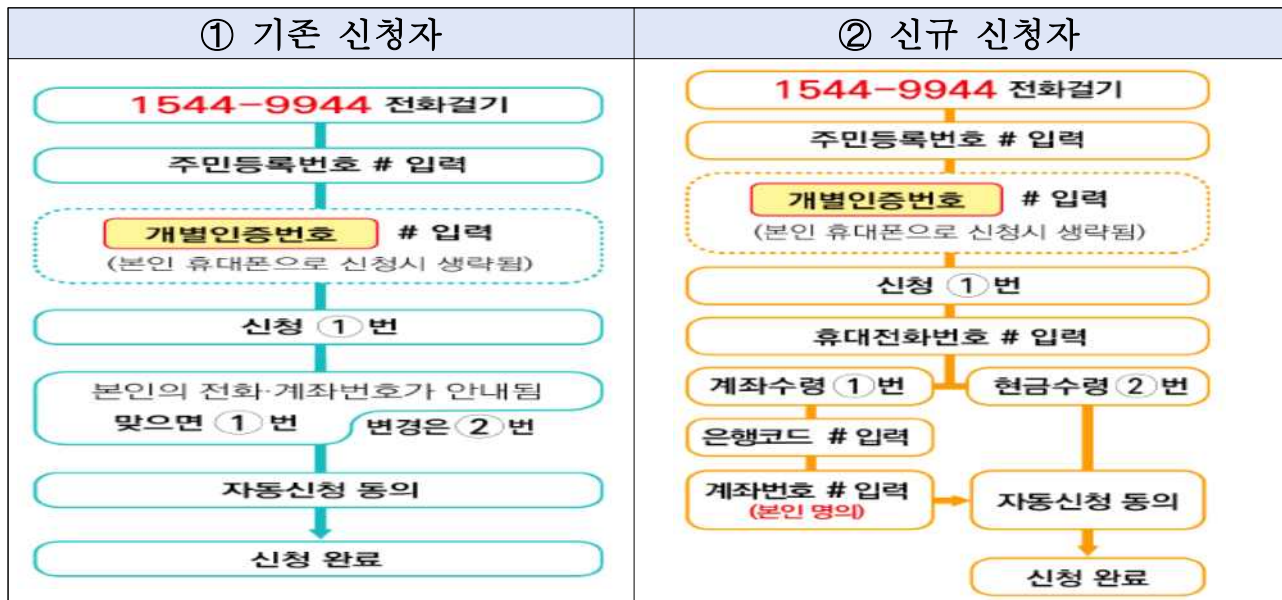
□ (문자메시지) ①'열람하기' → ②본인인증 → ③'신청하기' →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
○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의 안심마크([web 발신]  확인된 발신번호)가 표시
되니 확인 후 스미싱 걱정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② 자동응답시스템(ARS 1544-9944)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- 모바일 안내문의 스미싱이 걱정되는 경우, ARS를 이용하여 **개별인증번호** 입력



③ 상담센터 「신청도움서비스」 (이용시간: 09시~18시)

-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(손)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(ARS) 이용이 어려운 경우, **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**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④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-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6

주요 문답 사례

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-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, 참고 1 [근로장려금 신청 요건]의 **가구원·소득·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**해야 합니다.

2 신청 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- 모든 안내대상자에게 **9월 1일 국민비서**를 통해 1차 안내하고,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였습니다.
- **자동신청 완료자** 또한 **9월 1일 국민비서**로 안내할 예정이며, 확인하기 클릭 시 홈택스(모바일)의 신청 결과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 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.
- 미신청자에 한해 9월 2일, 4일, 9일, 14일 4회에 걸쳐 **카카오톡, 네이버, 문자 메시지**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.

3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
-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**홈택스(PC·모바일), 서면 신청만** 할 수 있습니다.
- * 홈택스경로 :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

4 올해 12월 17일에 얼마나 지급받나요?

- 장려금 **연간 예상산정액**(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)의 **35%**를 **12월 17일(예정)**에 지급하고, 내년 6월에 정산(연간 산정액-12월 지급액)합니다.
- 다만, 지급액이 **15만 원 미만**이거나 **환수가 예상**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심사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.
- * 내년 6월 정산 시,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%만 지급

5

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?

- 상반기 총급여를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.
-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: 상반기 총급여 + (상반기 총급여÷근무월수) × 6
- 중도퇴사자, 일용근로자 : 상반기 총급여 × 2
- * 계속 근무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,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

6
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, 가구원·소득·재산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?

- 상·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('25년)으로 판정하며, '27. 6월 정산 시에는 소득 발생연도 기준('26년)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- * 정산 시 기준은 정기분과 동일 (반기·정기 신청 시 지급액은 동일합니다.)

구 분	'26년 귀속 반기 신청 (상 : '26.9월, 하 : '27.3월)	'26년 귀속 반기 정산 시 ('27.6월)
총소득 기준	'25년 귀속 소득	'26년 귀속 소득
재산 기준일	'25.6.1.	'26.6.1.
가구원 기준일	'25.12.31.	'26.12.31.

7

이번 상반기분을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상반기분 신청기한인 9.15.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**하반기 신청**('27.3.1.~3.15.) 또는 **정기 신청**('27.5.1.~5.31.)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산정액의 100% 지급)
- 다만,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'27년 11월 30일까지 **기한 후 신청**하실 수 있습니다. (산정액의 95% 지급)

참고 7

'26년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 개정(안)

□ 근로장려세제(EITC)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(조특법)

- (개정 취지)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하고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확대
- (적용 시기) '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('27년 9월 신청분)부터 적용

| 근로장려세제(EITC)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(안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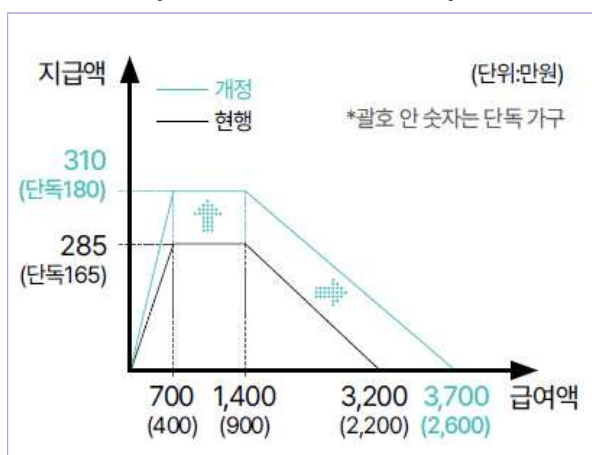
(만 원)

가구유형	소득요건 확대		최대지급액 인상		최대지급액 수급구간*	
	현행	개정(안)	현행	개정(안)	현행	개정(안)
단독 가구	2,200 미만	2,600 미만	165	180	400~900	(현행과 같음)
홀벌이 가구	3,200 미만	3,700 미만	285	310	700~1,400	(현행과 같음)
맞벌이 가구	4,400 미만	5,200 미만	330	360	800~1,700	800~ 1,800

*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1,700만 원 → 1,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혼인페널티 해소

(사례) 혼인 전 단독 가구 각 900만 원 소득시 총 330만 원 수령 가능하나, 혼인 후 맞벌이 가구로 적용되어 총 318만 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 존재

| 단독·홀벌이 가구 |



| 맞벌이 가구 |

